

## 제안된 집단 소송의 합의 통지서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53765/2017(뉴욕 카운티 대법원)**

***De La Rosa*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9-cv-04406 (ER)(뉴욕 카운티 대법원)**

법원에서 이 통지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변호사의 위임 합의가 아닙니다.

주의: 귀하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위 소송의 영향을 받는 제안된 합의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계단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가 있음.
2.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서 계단 없는 이동 통로가 필요함.

이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송의 법적 절차에 의해 귀하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정보

#### 1. 내가 왜 이 통지서를 받게 되었나요?

이 통지서의 목적은 휠체어 또는 기타 이동 보조 장치(보행기, 목발 또는 지팡이 포함)를 사용하는 사람들,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기된 두 건의 계류 중인 집단 소송과 관련하여 제안된 합의(이하 "합의")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53765/2017 (Supreme Court, N.Y. Co.) 및 *De La Rosa*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9-cv-4406(뉴욕 카운티 대법원).

#### 2. 이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53765/2017(뉴욕 카운티 대법원)

- 이 사건은 2017년에 6개의 장애인 권리 단체인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Brooklyn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Bronx Independent Living Services; Harlem Independent Living Center; Disabled In Action of Metropolitan New York; New York StateWide Senior Action Council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두 명의 개인 원고인 Sasha Blair-Goldensohn 및 Dustin Jones(이하 "기명 원고")에 의해 뉴욕 카운티의 뉴욕주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이하 "MTA") 및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통칭하여 "피고")가 계단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서 제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차별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하철역의 약 75%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타 형태의 계단 없는 이동 수단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하여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만 사항을 포함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ralegal.org/case/cidny-v-mta-state-court/>

*De La Rosa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9-cv-4406(뉴욕 카운티 대법원):

- 이 사건은 2019년 5월 뉴욕 연방법원에서 이동 장애가 있는 Jessica De La Rosa와 Jean Ryan이라는 두 명의 개인, 그리고 주 법원 사건의 동일한 장애인 권리 단체 연합을 대신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New York StateWide Senior Action Council 제외).
- 이 사건은 피고가 미국 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제 504조 및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하여 엘리베이터나 기타 계단 없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철역을 개조하는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만 사항을 포함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ralegal.org/case/de-la-rosa-v-mta/>

원고와 피고는 위 두 건의 소송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서면 합의(이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확정되기 전에 뉴욕주 법원 판사와 뉴욕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 세부사항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정부 사건이 뉴욕주 법원 판사에 의해 집단 소송으로 인정되고 연방정부 사건이 잠재적인 집단 소송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원고는 장애로 인해 계단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서 계단 없는 이동 경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하 "합의 집단")을 대표합니다.

### **3. 집단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원고는 자신과 이러한 관행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집단 구성원" 또는 "집단"이라고도 함)을 대리하여 집단 대표로 활동하도록 법원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4. 왜 합의가 필요한가요?**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는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도 도달한 합의가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고 집단 구성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집단 대표와 그 변호사는 합의의 이점, 계속되는 법정 소송의 가능한 결과, 계속되는 법정 소송 및 가능한 이의 제기의 비용과 기간을 고려했습니다.

#### **5. 합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로 인해 계단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서 계단 없는 이동 경로가 필요하며 현재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의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면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할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6. 내가 포함되는지 잘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경우 NYCSubways@dralegal.org 주소로 Disability Rights Advocates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332) 217-2363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 **7. 합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원고나 집단 구성원에게 어떠한 금전적 구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개별 클레임을 해지(포기)하지 않습니다.

#### **8. 합의가 승인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요?**

합의에 따라 원고는 특정 클레임을 해지(포기)하고 집단을 대표하여 특정 클레임을 해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 원고는 위의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계단 없는 이동 통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장되었을 수 있는 모든 클레임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거나 일부 역 리노베이션을 포함하여 계단 없는 이동 경로를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역을 개조할 방안을 강구하는 모든 클레임을 포기합니다. 이는 원고나 집단 구성원 모두 피고가 지하철역에 계단 없는 접근을 추가하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본 합의는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클레임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합의 집단 구성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 계약의 모든 분쟁 해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 계약 위반 또는 비준수를 주장하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 합의는 원고에게 무엇을 제공하나요?

합의는 원고에게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집단 구성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본 통지서의 아래 "제안된 합의는 어떤 효력을 갖게 되나요?"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10. 법원은 합의 승인 여부를 언제 결정하나요?

각각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열어 제안된 합의가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 법원 사건의 경우 공청회는 **2023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Shlomo Hagler 판사의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연방 법원 사건의 경우 공청회는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에 Edgardo Ramos 판사의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공청회 참석에 대한 최신 정보는 Disability Rights Advocates에 문의하십시오. 법원이 공청회 이후에 합의를 승인하더라도 여전히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해결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합니다. 합의가 승인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MTA는 합의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본 합의에서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선택권

-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공정성에 대해 법원에 발언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하고 귀하가 집단 구성원인 경우, 합의 조건이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 이러한 권리와 선택권은 본 통지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 제안된 합의는 어떤 효력을 갖게 되나요?

합의가 승인되면 피고는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정책을 시행하고 특정 약속을 할 것입니다.

이 통지서에 합의의 요구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A. 피고는 2055년까지 최대 접근성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합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역의 95%가 접근 가능하게 됨).

- 피고는 휠체어 사용자나 기타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55년까지 현재 접근할 수 없는 MTA의 364개 역 중 최소 95%(합의에 명시됨)에서 엘리베이터 및/또는 경사로를 추가하고 계단 없는 이동 통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 피고는 또한 205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이정표에 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 피고는 2020-2024년 뉴욕시 대중교통을 위한 자본 계획(이하 "자본 계획") 또는 사전 승인된 자본 계획에 포함된 81개의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 피고는 2035년까지 85개의 역을 추가로 만들 것입니다.
  - 피고는 2045년까지 90개의 추가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 피고는 2055년까지 90개의 추가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 위의 이정표 날짜의 달성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접근성 리노베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이 공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모든 이정표 날짜는 자금 가용성 및 우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자금 수준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150% 이상 증가하면 피고는 이 이정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따라 피고는 최대 접근성에 대한 본 약속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정표에서 확인된 접근 가능한 역 수의 최소 75%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면 준수가 상당히 충족된 것입니다.
- 각 5년 자본 계획이 끝날 때 MTA는 다음 5년 자본 계획이 끝날 때까지 접근 가능한 역 수와 95%의 접근성에 도달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 피고는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명령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환승 옵션, 연간 승객 수,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인구조사 자료 및 빈곤층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 주변 지역의 주거 밀도, 그리고 의료 센터, 학교, 공원, 상업 지구, 문화 허브 및 노인 센터와의 근접성.

B. 피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하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자금 수준을 약속합니다.

- 2020-2024년 자본 계획부터 시작하여 자본 계획 자금이 353억 8,900만 달러 이상(2020년 달러 기준)인 모든 미래 자본 계획에 대해 피고는 전체 자본 계획 중 뉴욕시 대중교통 자금의 14.69% 이상을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철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 위한 지하철역 리노베이션 자금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이 최소 자금 수준은 "양호한 수리 상태(State of Good Repair)" 요구사항이 모든 자본 계획의 75%를 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양호한 수리 상태(State of Good Repair) 프로젝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명이 다한 부분을 새로 교체합니다.
- 양호한 수리 상태(State of Good Repair)가 자본 계획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접근성을 위한 자금 비율은 75%를 초과하는 각 백분율에 대해 0.59%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접근성 자금은 항상 자본 계획 자금이 353억 8900만 달러 이상인 미래 자본 계획 중 전체 뉴욕시 대중교통 자금의 최소 8%가 될 것입니다.
- 원래 승인된 2020-2024년 자본 계획은 353억 8900만 달러였습니다. 위의 자금 조달 계획은 피고가 향후 자본 계획에 대해 동일한 수준 이상의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미래 자본 계획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 다른 접근성 비율이 적용됩니다.
  - 자본 계획이 최소 300억 달러 이상 353억 8900만 달러(2020년 달러 기준) 미만인 경우 최소 12%가 접근성에 배정될 것입니다.
  - 자본 계획이 200억 달러 이상 300억 달러 미만(2020년 달러 기준)인 경우 최소 10%가 접근성에 배정될 것입니다.
  - 자본 계획이 2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피고는 접근성 자금에 대해 원고와의 성실한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C. 이러한 약속은 접근성에 대한 피고의 최소 약속이며 상한선이 아닙니다.

- 합의의 일환으로 피고는 접근 가능한 역을 추가로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자금원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 피고가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러한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보너스이며 피고가 당시 현행 5년 자본 계획에 역 접근성을 포함하기로 약속한 금액에 더해질 것입니다.
- 민간 개발업자가 무료로 피고에게 지하철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경우, 해당 역은 피고의 이정표 또는 본 합의의 기타 약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 피고가 지하철역에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수행할 경우 해당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 향후 지하철역 리노베이션 비용이 모두 5천만 달러(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 이상이고 리노베이션이 MTA의 역 상태 설문조사에서 3점 이상으로 평가된 해당 역의 모든 역 구성요소를 포함할 경우, 피고는 또한 역 리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역 품질 개선 프로젝트(Qualifying Station Project)라고 합니다.
- 이 요구사항은 합의의 다른 조항에서 피고가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로 약속한 역 수를 늘리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피고는 역 품질 개선 프로젝트(Qualifying Station Project)를 이정표의 일부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로 이미 약속한 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위 섹션 B 참조). 피고는 대체할 역이 있는 경우 원고와 상의해야 하며 대체할 역에 대해 원고의 의견을 성실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단, 대중교통 피고는 대체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유지할 것입니다.
- 피고는 또한 연방 장애인법에 규정된 바대로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 개선 리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접근성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가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의 타당성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원고를 만나야 합니다.
- 2015-2019년 자본 계획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역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면제됩니다.

E.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 가능한 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일상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MTA의 최고 접근성 책임자는 6개월마다 원고에게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 접근 가능한 역을 만들기 위한 피고의 작업 진행 상황 및 이정표를 충족하기 위한 일정의 지연 상황
  - 모든 자금 조달 및 자본 계획 요청의 상태, 피고의 접근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 및
  - 역 리노베이션의 일환인 역 품질 개선 프로젝트 및/또는 리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결정.

F. 모든 혜택에는 합의의 특정 약관이 적용됩니다.

- MTA(및 기타 대중교통 피고)의 책임과 약속은 여러 조건이 적용되는 합의에 의해 규율되며, 그 중 일부는 자금의 가용성 및 불가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특정 상황의 경우 합의에 따른 대중교통 피고의 의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변호사

### 11. 이 사건의 변호사가 있나요?

예. 귀하가 집단 구성원인 경우, 비영리 로펌인 Disability Rights Advocates의 변호사와 Sheppard Mullin Hampton 및 Richter, LLP(총칭하여 "집단 변호인")가 본 합의의 목적에 한해 귀하를 대변합니다. 두 로펌은 장애 권리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Advocates 및 변호사의 약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raleg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eppard Mull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heppardmullin.com/new-yor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변호사가 이 사건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12.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지불합니다. 피고는 합의가 승인될 때까지 집단 변호인이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해 집단 변호인의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금액은 총 4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특정 한도에 따라 합의를 모니터링, 구현 및 관리하는 동안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을 집단 변호인에게 지불합니다.

양 당사자는 합의의 다른 모든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 수수료나 비용을 협상하지 않았습니. 변호사 수수료 지급은 본 합의에 따라 피고가 한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각 소송에서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집단의 구성원이고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합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합의 조건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만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 통지서에 설명된 조치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 합의를 예비 승인했으며 제안된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3년 4월에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53765/2017(뉴욕 카운티 대법원)의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아래 주 법원 주소로 서면 이의 제기서를 주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De La Rosa*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9-cv-4406(뉴욕 카운티 대법원)의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아래 연방 법원 주소로 서면 이의 제기서를 연방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및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53765/2017(뉴욕 카운티 대법원)의 합의에 대한 서면 이의 제기는 **2023년 3월 24일**까지 소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다음 주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Hon. Shlomo S. Hagler  
Supreme Court of New York  
Courtroom 335, Part 17  
60 Centre Street  
New York, NY 10007

사본 발송:

Torie Atkinson  
Disability Rights Advocates  
655 Third Avenue, Fourteenth Floor  
New York, NY 10017-5621

Allan J. Arffa  
Gregory F. Laufer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1285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9

*De La Rosa* 외 및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외 간의 소송, 사건 번호 19-cv-4406(뉴욕 카운티 대법원)의 합의에 대한 서면 이의 제기는 **2023년 3월 8일**까지 소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다음 주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Hon. Edgardo Ramos  
Thurgood Marshall United States Courthouse  
40 Foley Square  
New York, NY 10007

사본 발송:

Rebecca Rodgers  
Disability Rights Advocates  
655 Third Avenue, Fourteenth Floor  
New York, NY 10017-5621

Allan J. Arffa  
Gregory F. Laufer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1285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9

### 법원은 언제 합의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나요?

법원이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주 법원의 경우 공청회는 **2023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Shlomo Hagler 판사의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Supreme Court of New York  
Courtroom 335, Part 17  
60 Centre Street  
New York, NY 10007

연방 법원의 경우 공청회는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에 Edgardo Ramos 판사의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Thurgood Marshall United States Courthous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Courtroom 619  
40 Foley Square  
New York, NY 10007

공청회 날짜 또는 시간에 대한 변경 사항은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웹사이트 <https://dralegal.org/class-notice/nyc-subways-settlement-fairness-hear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제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Disability Rights Advocates 및 Sheppard Mullin의 변호사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판사가 사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원하는 경우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공청회가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 공청회의 교통비를 직접 지불하거나 공청회가 원격으로 개최되는 경우 자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서한을 보낸 경우, 서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공청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마감일까지 서면 서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청회 참석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 14.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발언을 요청하려면 사건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건 번호가 기재된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을 포함하고 공청회에서 전화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로 제시할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전자적으로 귀하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최종 승인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구성원으로서 공청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출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출두하는 경우 귀하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청회 날짜는 전체 집단에 추가 통지 없이 법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에 대한 전자 통지서를 받으려면 법원에 출두 통지서를 제출하고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십시오.

#### 15.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 합의가 일단 승인되면 귀하는 향후 혜택을 받기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이 통지서에 설명된 대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능력을 잃게 됩니다.

####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통지서는 제안된 합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 합의와 정확한 약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https://dralegal.org/press/mta-settlement/> 방문
2. 다음 연락처로 집단 변호인에게 문의:

Disability Rights Advocates  
Attn: Torie Atkinson  
655 Third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17  
[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  
Telephone: (332) 217-2363

3. 주정부 사건의 경우 <https://iapps.courts.state.ny.us/nyscef/HomePage> (사건 번호 153765/2017), 연방정부 사건의 경우 <https://pacer.login.uscourts.gov/>(사건 번호 19-cv-4406)에서 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개 액세스(PACER)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 액세스.

합의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법원이나 법원 서기실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액세스 가능한 다른 형식으로 이 통지서의 사본을 얻으려면 위에 기재된 집단 변호인 또는 [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에 문의하십시오.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아이티 크레올어 또는 벵골어로 된 이 통지서의 사본을 얻으려면 아래를 참조하거나 원고([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 또는 피고([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에게 문의하십시오.

Este Aviso también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Para obtener copias de este Aviso en español, por favor comuníquese con los Demandantes al [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 o con los Demandados al [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 o lea [aquí](#).

Настоящее Уведомление также доступн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копии эт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вяжитесь с Истцом по адресу [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 или с Ответчиками по адресу [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 или прочитайте [здесь](#).

本通知也提供中文版本。如欲获取本通知的中文版本，请与原告联系，[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或与被告联系，[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或在[此](#)阅读。

이 공지문은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한국어로 된 공지문의 사본을 받으시려면 원고에게 [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로 연락해 주시거나 피고에게 [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지문은 [여기](#)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Avi sa a disponib tou an kreyòl ayisyen. Pou jwenn kopi Avi sa a an kreyòl, tanpri kontakte Pleyan yo nan [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 oswa ak Defandan yo nan [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 oswa li [isit la](#).

এই নোটিশটি বাংলায়ও পাওয়া যাচ্ছে। এই নোটিশের কপি বাংলায় পেতে, বাদীদের সাথে ([nycsubways@dralegal.org](mailto:nycsubways@dralegal.org)) অথবা আসামিদের সাথে যোগাযোগ করুন ([accessibility@mtahq.org](mailto:accessibility@mtahq.org)), অথবা [এখানে](#) পড়ুন।